

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60조의3, 제60조의4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,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위원회"(이하 "지정위원회"라 한다)란 「물류정책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0조의2의 녹색물류협의 기구를 말한다.
2. "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"(이하 "지정심사대행기관"이라 한다)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0조의7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제출서류) 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14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항목별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지정위원회의 업무)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업무규정의 승인
2. 삭제
3.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정심사결과 심의 및 지정여부 결정
4. 제10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재심사

5.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이 요청한 이의신청
6. 삭제
7.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
8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, 지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

제5조(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고,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과정의 전문성 확보 및 지정심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(이하 "지정센터"라 한다)을 설치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정심사대행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지정센터의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
2. 지정관련 업무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
3. 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지정심사대행기관의 업무)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60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신청의 접수

2.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관련 업무규정의 제·개정
3. 제9조에 따른 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 구성·운영
4. 제10조에 따른 지정심사 및 지정심사 계획수립과 지정심사 결과의 보고
5. 제10조 및 제11조의 재심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
6. 제13조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처리
7.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점검 계획수립과 정기점검 결과의 보고
8. 제17조에 따른 지정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
9. 지정제도 홍보
10. 그 밖에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
제7조(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도·감독) 국토교통부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6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정심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

3.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지정심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 구성·운영) ① 지정심사대행

기관의 장은 지정제도의 운영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심사위원그룹을 구성하여야 한다.**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그룹은 별표 2의 평가항목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1. 대학, 국·공립연구소, 정부출연연구소, 대학연구소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의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
2. 물류 또는 에너지 관련 협회·전문기관·단체,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사람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

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서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심사위원을 평가항목별로 2명 이상으로 선발하여 총 7명 이상으로 지정심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심사단 위원 중 1명을 지정심사단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지정심사 등)** ① 지정심사단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 한다. 1차 심사는 신청인이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지정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 등에 대해 지정심사단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② 2차 심사는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 집계 결과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항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고 평가항목별 2할 이상을 취득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**현장조사**를 시행한다. 이 경우 지정심사단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신청인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지정심사단은 지정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**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**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점수 결과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⑤ 지정위원회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이 요청한 지정심사 결과를 심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지정위원회는 제4항의 지정심사 결과를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심사단을 참석시켜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- ⑦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

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재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.

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, 지정이 결정된 기업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이의신청 절차) ① 제10조제9항의 지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0조제9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(이하 "이의신청자"라 한다)는 재심사요청 사유서를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요청 사유서가 제출되면 재심사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정표시)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(이하 "지정업체"라 한다)는 별표 3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정서의 재발급 신청 등) ① 지정업체가 발급받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서(이하 "지정서"라 한다)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사유서

2. 지정서(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)

② 지정업체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사유서

2. 지정서

3.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, 변경 전의 지정서는 회수하여야 한다.

④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화재, 도난, 분실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지정취소 통보 등) ① 법 제60조의6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 처분의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지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

있다.

④ 지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20일 이내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,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과 처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,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정기점검 등) ①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4조의7

에 따라 지정업체가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점검하기 위해 지정일로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정기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, 지정업체에 정기점검일 14일 이전에 정기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일을 통보받은 지정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업체 심사 신청서를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정기점검을 통해 지정업체에 대한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기점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.

④ 제3항의 정기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이

경우 재심사 요청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.

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재심사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고, 지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재심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된 후 세 차례의 정기점검에서 연속으로 지정을 유지한 지정업체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한 차례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정기점검의 면제실적과 사유를 지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16조(비밀유지의 의무) 지정위원회, 지정심사대행기관 및 지정심사단의 지정업무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공표·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수수료)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실비를 기준으로 2백만원 이내에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고,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2021-334호, 2021.4.20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심사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당시 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7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부 칙 <제2022-242 호, 2022 5. 2. 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평가항목별 구비서류

평가항목	구비서류
1. 관리범위 및 관리수준	
1-1. 물류시설,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 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	물류시설, 운송수단 등 보유시설 및 장비 현황 보고서(차량의 경우 위수탁, 용차까지 포함), 중·장기 경영전략 보고서, 환경친화적 물류경영 조직 현황 및 업무분장표, 환경친화적 물류경영 이해관계자 정보공유 체계 보고서 등
1-2.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, 온실가스 배출량, 화물운송량 관리 수준	에너지사용량 및 수송량 수집절차 설명서,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(최근 3년간), 소속별, 협력기업별 온실가스 공유 현황,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등
2.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	
2-1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	연도별 에너지, 온실가스 감축 또는 효율화 추진계획서 및 이행결과 보고서 등
2-2. 물류분야 에너지,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을	연도별 에너지, 온실가스 감축 또는 효율화 목표 설정 및 달성 보고서 등
3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효과 분석 및 정부보고	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효과분석 보고서,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성과지표 운영보고서, 지속가능경영보고서(해당 기업만 제출), 정부보고서 또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검증보고서 등

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평가 기준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1. 관리범위 및 관리수준 (30점)		
1-1. 물류시설,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 적 물류활동의 관리 범위 설정 및 관리체 계 구축(15점)	가. 물류시설, 운송수단 등에 대한 관리범위 설정 수준 나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경영목표의 설정여부 및 내용 다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조직 및 인력 배치, 내외부 이해관계자간 소통·협력 등 추진체계의 구축 범위 및 정도, 장단기 계획 수립현황	5 5 5
1-2. 물류분야 에너지 사 용량, 온실가스 배 출량, 화물운송량 관리수준(15점)	가.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, 화물수송량 산정범 위 관리수준 나.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, 화물수송량 산정자료와 정보의 정확성 및 이해관계자간 공유 실천 정도 다.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, 화물수송량 산정시스템의 기계화 또는 IT화 추진 수준	5 5 5
2.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(40점)		
2-1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(20 점)	가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사업의 과제 수 및 내용, 사업 및 투자 규모(양 또는 비율) 나. 환경친화적 물류사업 계획 대비 실적	10 10
2-2. 물류분야 에너지, 온 실가스 감축 목표 설 정 및 달성율(20점)	가. 물류분야 에너지, 온실가스 감축 또는 효율화 목표 설정 나. 물류분야 에너지, 온실가스 감축 또는 효율화 목표 달성율	10 10
3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에 관한 효과분석 및 정부보고(30점)	가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실적의 주기적인 평가 및 효과 분석 실시, 정확성 수준 나. 정부보고 또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검증실시 여부 다. 환경친화적 물류지표의 설정 및 측정 여부(예, 물류공동화량 (율), 전환수송 전환량(율) 등)	10 10 10
합 계		100

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

「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」 제12조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는 다음과 같다.

컬러	흑백
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Certified Green-Logistics Company 국토교통부	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Certified Green-Logistics Company 국토교통부
회색 1	회색 2
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Certified Green-Logistics Company 국토교통부	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Certified Green-Logistics Company 국토교통부

도안설명

주황색으로 녹색물류전환을 위한 기업의 의지를, 연두색으로 녹색물류를 상징하였으며 자연을 뜻하는 ‘G’를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과의 조화를 표시

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정기점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90일
신청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)	전화번호
	소재지	

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4의2제4항 및 「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정기점검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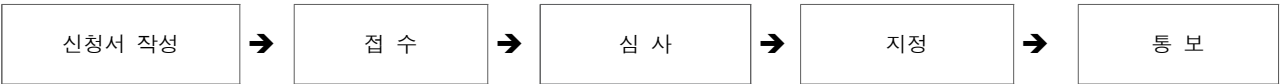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「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」 별표 1의 구비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국토교통부(지정업무 대행기관)

지정업체 정기점검결과		
점검일자 (Date of Inspection)	점검결과(Result)	확인자 (Confirmer)